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8. 01. 23 (수) 평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08. 02. 20(수)
- 다. 상정일자 : 2008. 02. 20(수) 제14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재무과장 김장래)

가.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 명확화,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간 연장, 시장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축소 등 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관련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 정확화(안 제8조)
 - 고령자의 노후소득 지원을 위해 도입한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정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이를 부부합산 연간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용면적 85㎡이하이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등으로 정하여 재산세 25%를 경감토록 함.
- 도서관, 과학관에 등에 대한 감면요건 강화(안 제9조)
 - 지금까지는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감면하였으나, 도서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하여만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면제
-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07.4.11)에 따라서 인용조문 정정(안 제11조)

-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대상 사업 등 규정(안 제11조의2)
 - 감면대상사업을 농협중앙회 등의 구매, 판매, 보관, 가공, 무역, 생산, 검사, 교육시설용 부동산 등으로 하고 감면율은 75%로 정함
-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안 제19조)
 - 2007. 12. 31. 감면시한이 완료됨에 따라 2009.12.31.까지 기간을 연장 하고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 전방조종자동차 : 2008까지 66% 감면, 2009까지는 33% 경감
 - 기 타 : 2008까지 33% 감면, 2009까지는 16% 경감
- 시장 정비사업 감면대상 축소(안 제21조)
 -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은 비주거용 부동산에 한해서만 재산세 50% 감면토록 제한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상진)

가. 본 조례안은 지방세 및 관련법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8조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에 대하여 2007.07.01이후 출시되어 2008년부터 감면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까지 포함되도록 하므로서 정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 제9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은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세제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도서관법」, 「과학관육성법」,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법명 및 조문을 정정하였고,
-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의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므로서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음.

- 또한 제19조의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07년12월31일에서 2009년12.31일까지 차등적으로 연장하므로서 주민의 세부담 급등에 따른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였으며,
- 제21조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므로서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다. 위 개정조례안은,

-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표준개정안을 기준으로,
- 지방세 감면의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므로서 세금 부과에 대한 주민의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부담을 점차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